

서울특별시 민자도로 통행료 인상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545
----------	-----

2023년 3월 9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2월 6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23년 2월 9일

다. 상정일자 : 제316회 임시회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2023년 2월 24일 상정, 보류)

제316회 임시회 제5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2023년 3월 9일 상정, 조건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최진석 안전총괄실장)

가. 제안이유

우리시에서 관리 중인 민자도로의 통행료 인상을 위해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 제13조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징수대상시설

구 분	용마터널	강남순환로
위 치	중랑구 면목동~ 구리시 아천동	금천구 시흥동~ 서초구 우면동

규 모	연장 3.5km, 왕복 4차로	연장 12.4km, 왕복 6~8차로
영업소	1개소	2개소(금천, 선암)
개통일시	2014.11.21.	2016.7.3.

구 분	신월여의지하도로	서부간선지하도로
위 치	강서구 신월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영등포구 양평동~ 금천구 독산동
규 모	연장 7.53km 왕복4차로	연장 10.33km 왕복4차로
영업소	1개소	1개소
개통일시	2021.4.16.	2021.9.1.

(2) 통행료 인상내역

(단위 : 원/대, VAT포함)

구 분	용마터널			강남순환로		
	최초 (14.11.21)	현재 (2020년)	2023년	최초 (16.7.3)	현재 (2020년)	2023년
소 형	1,500	1,500	1,700	1,600	1,700	1,800

구 분	신월여의지하도로			서부간선지하도로		
	최초 (21.4.16)	-	2023년	최초 (21.9.1)	-	2023년
소 형	2,400	-	2,600	2,500	-	2,700

※ 경차 : 50% 할인 적용.

(3) 통행료의 산출기초

- 협약상 소형차 기준통행료에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누적 적용하여 산정(붙임 참조)

(4) 징수기간 : 2023.4.1.부터

(5) 통행료 징수방법 : 유인징수 및 전자요금(ETCS)징수 방식 혼용

(6) 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 유료도로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8조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붙임 참조)

(7) 유사시설의 통행료 수준 : 원안 붙임 참조

3. 검토보고요지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 개요

- 동 의견청취안은 민자도로인 용마터널, 강남순환로, 신월여의지하도로, 서부간선지하도로의 통행료 인상요인이 발생하여 2023.4.1일부터 적용할 인상안에 대해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 제13조¹⁾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 금회 요금인상안을 살펴보면 소형차 기준으로 용마터널 200원(1,500원→1,700원), 강남순환로 100원(1,700원→1,800원), 신월여의지하도로 200원(2,400원→2,600원), 서부간선지하도로 200원(2,500원→2,700원)을 각각 인상하려는 것임.
- 먼저, 용마터널의 경우 '14.11월 개통 당시 최초 통행료가 소형차량 1,500원, 중형차량 2,500원, 대형차량 3,200원으로 결정된

1) 제13조(사용요금의 의회 의견청취) 시장은 민간투자사업에 의해 준공된 시설에 대해 사용요금의 최초 결정과 운영 중 요금을 인상하는 때는 사전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단, 사용요금의 최초 결정 시에는 최초요금 징수 시작 60일 전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후 '20년에 소형차량을 제외하고 중형차량 2,600원(100원↑), 대형차량 3,300원(100원↑)으로 각각 100원씩 인상된 바 있으며,

- 강남순환로의 경우는 '16.7월 개통 당시 최초 통행료가 소형차량 1,600원, 중형차량 2,800원²⁾으로 결정된 후 '20년에 소형차량만 1,700원으로 100원 인상되었고,
- '21년 4월과 9월에 각각 개통한 신월여의지하도로와 서부간선지하도로는 소형차량 전용도로로서 최초 통행료가 2,400원과 2,500원으로 결정된 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음([표] 참조).

[표] 금회 통행료 인상안 내역

(단위 : 원/대, VAT포함)

구 분	용마터널				강남순환로			
	최초 ('14.11.21.)	현재 ('20년)	2023년	인상액	최초 ('16.7.3)	현재 ('20년)	2023년	인상액
소 형	1,500	1,500	1,700	200	1,600	1,700	1,800	100
구 분	신월여의지하도로				서부간선지하도로			
	최초 ('21.4.16.)	현재 ('21년)	2023년	인상액	최초 ('21.9.1)	현재 ('21년)	2023년	인상액
소 형	2,400	2,400	2,600	200	2,500	2,500	2,700	200

※ 경차 : 50% 할인 적용.

■ 통행료 인상안에 대한 의견

- 이번 통행료 인상안은 각각의 실시협약조건³⁾에 따른 것으로, 기존 통행료가 결정된 실시협약시점부터 2022.12월말까지의 '누적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을 기존 통행료에 반영하여 산출된 금액을 10원 단위에서 사사오입 한 후 100원 단위 통행료로 산정한 것임([표] 참조).

2) 강남순환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결과에 따라 대형차량 통행제한

3) '용마터널' 제31조, '강남순환로' 제32조, '신월여의지하도로' 제47조, '서부간선지하도로' 제47조

[표] 2023년 통행료 산정('23.4.1.)

(단위 : 원/대, VAT포함)

구 분		용마터널	강남순환로	신월여의지하도로	서부간선지하도로
		소 형	소 형	소 형	소 형
기준 통행료(실시협약) (A)		1,000. ⁰⁰	1,067. ⁴⁸	1,862. ⁰⁰	1,923. ⁶⁶
최초 통행료		1,500	1,600	2,400	2,500
현재 통행료		1,500	1,700	2,400	2,500
누적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B)		166. ²³ %	171. ⁶⁷ %	141. ⁸⁹ %	139. ⁸⁶ %
2023년	산정통행료(C)	1,662. ³¹	1,832. ⁵⁷	2,642. ⁰¹	2,690. ⁴⁷
	적용통행료(D)	1,700	1,800	2,600	2,700

100원 단위로 사사오입

※통행료 산정 : (A) × (B) = (C),

(C) → (D)

- 통행료 조정과 관련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23조제3항4)에 따르면 실시협약에서 정해진 사용료는 물가 변동이나 그 밖에 실시협약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실시협약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용마터널 실시협약 제31조, 강남순환로 실시협약 제32조, 신월여의지하도로(舊 서울제물포터널) 실시협약 제47조, 서부간선지하도로 실시협약 제47조에는 통행료는 원칙적으로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연 1회에 한하여 조정 가능함.

4) 제23조(사용료) ①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총사업비, 적정수익률, 무상 사용기간 또는 소유·수익 기간 등을 고려하여 실시협약에서 정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정한 사용료를 해당 시설의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사용료 징수 시작 60일 전까지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조제2호에 따른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임차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1. 사용방법 및 사용료율
2. 사용료의 산출기초
3. 사용료의 징수방법
4. 사용료의 감면율 또는 할증률 및 그 대상
5. 유사시설의 사용료 수준
6. 그 밖에 사용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정해진 사용료는 물가 변동이나 그 밖에 실시협약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협약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이에 사업시행자는 사업연도에 적용할 통행료를 조정기준일까지의 누적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의 범위 내에서 산정하여 주무관청에 매년도 2월 말까지 제출하고 서울시와 협의하여 통행료를 결정하게 됨.

[표] 실시협약 상 통행료의 정기적 조정 관련 조항

용마터널 실시협약('18.6.8.)	강남순환로 실시협약('14.12.10.)
<p>제 31 조 (통행료의 정기적 조정)</p> <p>① 통행료는 원칙적으로 매년 4월 1일에 연 1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p> <p>② 사업시행자는 각 사업연도 2월 말일까지 직전 사업연도의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된 통행료를 서울특별시에 신고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통행료 조정을 하고자 하는 당해 사업연도 이전에 분항에 따른 통행료 조정을 하지 않았거나 일부만 조정하였을 경우 그 기간 동안의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일부 조정의 경우는 미반영 부분)을 누적적으로 합계한 범위 내에서 통행료를 조정한다.</p> <p>③ 서울특별시는 사업시행자가 자율적으로 신고한 통행료가 적정치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통행료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협약당사자는 상호 협의하여 적정 통행료를 결정한다.</p> <p>④ 사업시행자는, 통행료 징수 방식의 변경으로 100원 단위 이하로 징수할 수 있게 되지 않는 한, 조정된 통행료는 추정통행료 수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원칙적으로 100원 단위로 결정한다.</p>	<p>제 32 조 (통행료의 정기적 조정)</p> <p>① 통행료는 원칙적으로 매년 4월 1일에 연 1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p> <p>② 사업시행자는 각 사업연도 2월 말일까지 직전 사업연도의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된 통행료를 서울특별시에 신고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통행료 조정을 하고자 하는 당해 사업연도 이전에 분항에 따른 통행료 조정을 하지 않았거나 일부만 조정하였을 경우 그 기간 동안의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일부 조정의 경우는 미반영 부분)을 누적적으로 합계한 범위 내에서 통행료를 조정한다.</p> <p>③ 서울특별시는 사업시행자가 자율적으로 신고한 통행료가 적정치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통행료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협약당사자는 상호 협의하여 적정 통행료를 결정한다.</p> <p>④ 사업시행자는, 통행료 징수 방식의 변경으로 100원 단위 이하로 징수할 수 있게 되지 않는 한, 조정된 통행료는 추정통행료 수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원칙적으로 100원 단위로 결정한다.</p>
<p>신월여의지하도로(舊 서울제물포터널) 실시협약('14.5.9.)</p>	<p>서부간선지하도로('15.3.11.)</p>
<p>제 47 조 (통행료의 결정 및 조정)</p> <p>① ~ ② (생략)</p> <p>③ 최초통행료를 제외한 연도별 통행료는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연 1회에 한하여 조정하며, 사업시행자는 사업연도에 적용할 통행료를 조정기준일까지의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의 범위 내에서 산정하여 주무관청에 매년도 2월 말까지 제출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통행료를 결정한다.</p>	<p>제 47 조 (통행료의 결정 및 조정)</p> <p>① ~ ② (생략)</p> <p>③ 최초통행료를 제외한 연도별 통행료는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연 1회에 한하여 조정하며, 사업시행자는 해당 사업연도에 적용할 통행료를 직전 연도 통행료에 직전 연도 통행료 산정 기준일로부터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의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의 범위 내에서 산정하여 주무관청에 매년도 2월 말까지 제출하고,</p>

<p>④ 불가항력 사유, 주무관청의 귀책사유, 기타 본 협약에서 인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추가 비용이나 손실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주무관청의 부담분 일부를 통행료를 조정하여 해소하기로 협약당사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통행료를 추가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협약당사자가 통행료의 적절한 조정의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협약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정한 전문기관에 통행료 수준조정의 타당성 평가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의뢰결과에 따라야 한다.</p>	<p>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협의하여 통행료를 결정한다.</p>
<p>⑤ 통행료 징수방식의 변경에 의하여 100원 단위 미만으로 징수할 수 있게 되지 않는 한 통행료는 원칙적으로 100원 단위로 사사오입하여 결정하고, 이로 인한 추가 또는 감소한 통행료는 차기년도 통행료 결정에 반영한다.</p>	<p>④ 불가항력 사유, 주무관청의 귀책사유, 기타 본 협약에서 인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추가 비용이나 손실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주무관청의 부담분 일부를 통행료를 조정하여 해소하기로 협약당사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통행료를 추가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협약당사자가 통행료의 적절한 조정의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협약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정한 전문기관에 통행료 수준조정의 타당성 평가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의뢰결과에 따라야 한다.</p> <p>⑤ 통행료 징수방식의 변경에 의하여 100원 단위 미만으로 징수할 수 있게 되지 않는 한 통행료는 원칙적으로 100원 단위로 사사오입하여 결정하고, 이로 인한 추가 또는 감소한 통행료는 차기년도 통행료 결정에 반영한다.</p>

- 따라서 금회 실시협약에 따라 서울시와 사업시행자가 협의하여 누적 소비자물가변동분을 반영한 통행료 인상안을 제출한 것은 관련법 및 협약상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 다만, 현재의 인상(안)은 당초 민간사업자가 신고한 통행료 인상(안) 대비 용마터널의 중형차량(200원↑)과 대형차량(400원↑) 인상분과 강남순환로의 중형차량 인상분(200원↑)이 미반영되어 있음([표] 참고)

[표] 통행료 인상(안)(*22.12. 소비자물가지수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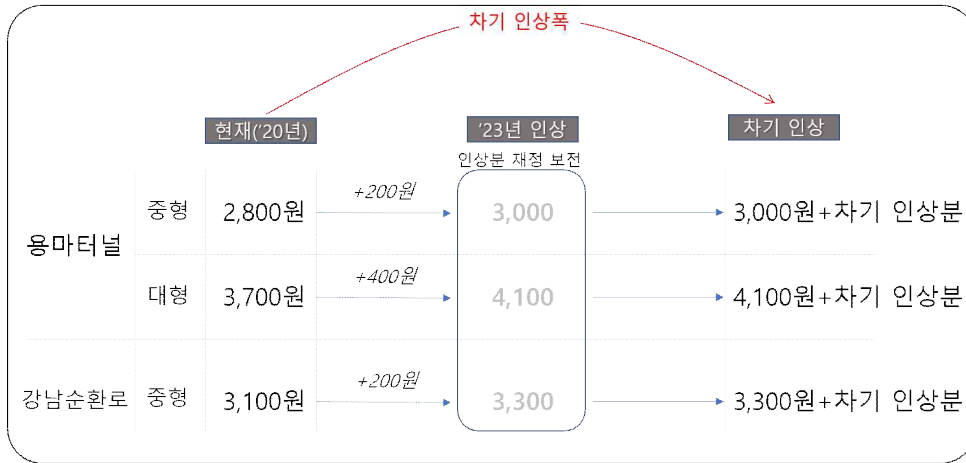
(단위 : 원/대, VAT포함)

구 분		소 형	중 형	대 형
용마터널	현 재	1,500	2,600	3,300
	인상신고(*23.1)	1,700(+200)	2,800(+200)	3,700(+400)
	인상안	1,700	미인상	미인상
강남순환로	현 재	1,700	2,900	-
	인상신고(*23.1)	1,800(+100)	3,100(+200)	-

	인상안	1,800	미인상	-
신월여의 지하도로	현 재	2,400	-	-
	인상신고('23.1)	2,600(+200)	-	-
	인상안	2,600	-	-
서부간선 지하도로	현 재	2,500	-	-
	인상신고('23.1)	2,700(+200)	-	-
	인상안	2,700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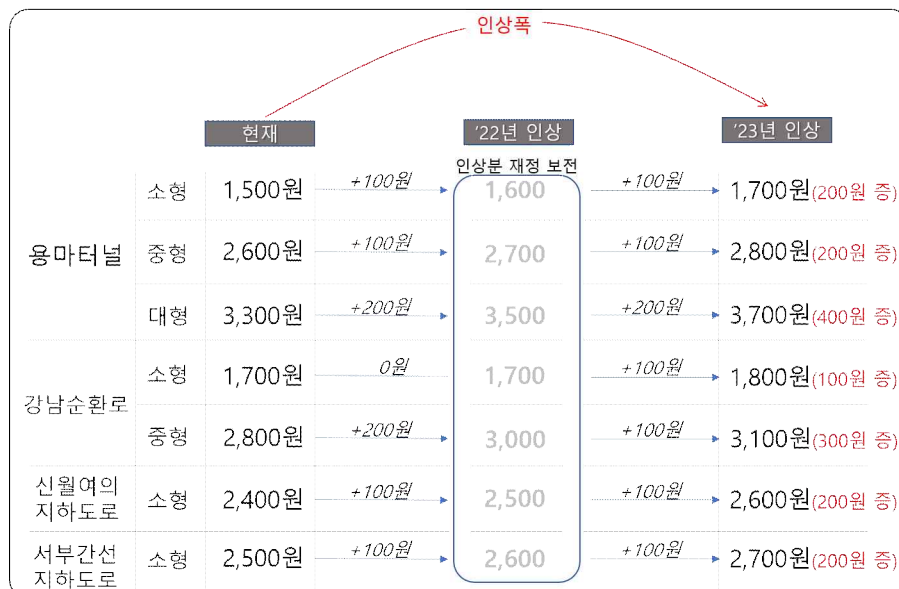
※ 중·대형 통행료 미인상 재정지원 예상액 : 3.4억원 (용마터널 1.1, 강남순환로 2.3)

- 이는 시가 해당 중·대형차량의 인상분 약 3억 4천만원(용마터널 1억 1천만원, 강남순환로 2억 3천만원)을 재정으로 보전하기로 결정함에 기인한 것으로, 시의 이러한 결정의 배경은 중·대형 화물차량의 경우 대부분 생계형이고 소형차량보다 상대적으로 유류비 부담이 크면서 최근 2~3년 동안 물류비용이 크게 상승하는 등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물류비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한 측면이라는 설명임.
- 이처럼 재정 보전을 통한 중·대형차량 통행료 동결은 민자도로가 지향하는 이용자부담원칙과는 결을 달리하는 것으로 결국 통행자가 부담해야 할 인상분을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형국이 되는 것이므로 그 타당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할 사항이라 여겨짐.
- 또한, 금회 인상안대로 중·대형차량의 인상분을 재정으로 보전해 줄 경우 차기 도래하는 통행료 인상시점에서는 금회 인상신청분에 추가적인 차기 인상분이 더해져 그 인상폭이 더욱 커지게 되는 효과도 감안할 필요가 있음([그림] 참조).



[그림] 차기 통행료 인상폭(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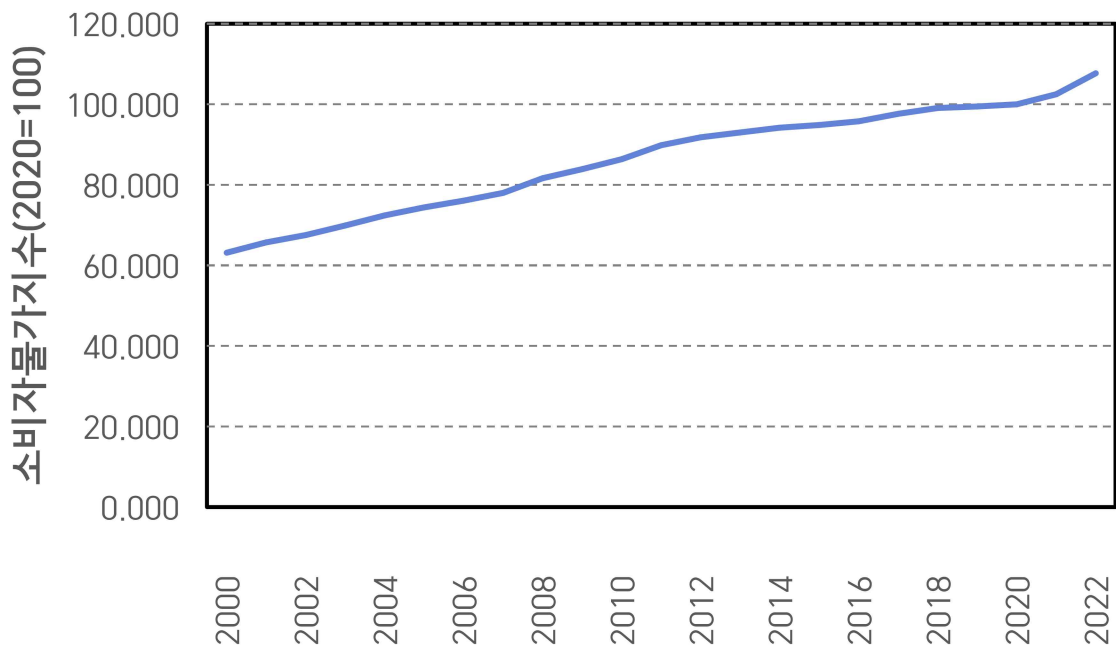
- 예를 들어, '22년에 용마터널(소형 100원↑, 중형 100원↑, 대형 200원↑), 강남순환로(중형 200원↑), 신월여의지하도로(소형 100원↑), 서부간선지하도로(소형 100원↑)에 대해 사업시행자로부터 시에 인상 요청이 있었으나 당시 이용자 부담을 경감하고자 미인상했는데,
- 시는 '24회계연도 예산안에 '22년 미인상에 따른 재정보전분을 편성할 계획으로 현재 소요 재정보전액을 산정하고 있는 상황이며, '22년 미인상으로 인해 이용자 입장에서는 금회 인상분이 다소 크게 느껴지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



[그림] 통행료 인상폭(현재→'23년)

■ 종합의견

- 금회 인상안은 용마터널과 강남순환로의 경우 ‘20년 통행료 인상 이후 3년 만에, 신월여의지하도로와 서부간선지하도로의 경우는 ‘21년 최초 통행료 결정 이후 약 2년 만에 해당 실시협약 조건에 따라 누적 소비자물가변동분을 반영하여 통행료를 인상하려는 것으로 법적 절차상 특별한 문제는 없음.
- 다만, 소비자물가지수 변동 추이([그림] 참조)에서 알 수 있듯이 시간이 경과 할수록 민자도로의 통행료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에 따라 점진적으로 인상될 것이 자명함.



[그림] 소비자물가지수 변동

- 이에 대해 시가 통행료 인상에 대한 이용자 부담 경감을 위해 일부 재정 보전의 방법으로 인상시기를 인위적으로 조정할 경우 민자도로가 지향하는 이용자부담원칙이 지켜지지 못함은 물론

론, 차기 조정시점에 가서는 재정으로 보전해 준 잠재적 인상분에 차기 인상분이 누적되면서 이용자에게 상대적으로 큰 폭의 인상분으로 느껴지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과,

-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방비, 전기사용료, 상·하수도사용료 등 공공요금이 줄인상되는 국내의 어려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히 판단할 사안이라 여겨짐.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질의) 관련 법령 및 실시협약에 따른 민자도로 통행료 인상체계를 감안하면 금회 통행료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용마터널과 강남순환로는 요금인상 후 3년만에, 신월여의지하도로 및 서부간선지하도로의 경우 개통 후 2년만에 인상하는 것으로 그 주기가 너무 짧아 이용자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인데, 다른 대안은 없는지?(김형재 의원)

답변) 통행료를 미인상하게 되는 경우 이를 재정 보전해줘야 하는데, 통행료 미인상에 대한 재정 보전은 이용하지도 않은 시민에게 그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됨.(최진석 안전총괄실장)

5. 토론요지 : 없 음

6.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 해당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8. 심사결과 : 조건부 의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 의결 조건 : 최근 공공요금 등 급격한 생활물가 상승에 따른 가계부담 충격과 민자도로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본 인상안의 시행을 금년 하반기에 추진할 것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 민자도로 통행료 인상 의견청취안

의안 번호	545
----------	-----

제출년월일 : 2023년 2월 6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우리시에서 관리 중인 민자도로의 통행료 인상을 위해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 제13조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징수대상시설

구분	용마터널	강남순환로
위치	중랑구 면목동~ 구리시 아천동	금천구 시흥동~ 서초구 우면동
규모	연장 3.5km, 왕복 4차로	연장 12.4km, 왕복 6~8차로
영업소	1개소	2개소(금천, 선암)
개통일시	2014.11.21.	2016.7.3.
구분	신월여의지하도로	서부간선지하도로
위치	강서구 신월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영등포구 양평동~ 금천구 독산동
규모	연장 7.53km 왕복4차로	연장 10.33km 왕복4차로
영업소	1개소	1개소
개통일시	2021.4.16.	2021.9.1.

나. 통행료 인상내역

(단위 : 원/대, VAT포함)

구 분	용마터널			강남순환로		
	최초 ('14.11.21)	현재 (2020년)	2023년	최초 ('16.7.3)	현재 (2020년)	2023년
소 형	1,500	1,500	1,700	1,600	1,700	1,800

구 분	신월여의지하도로			서부간선지하도로		
	최초 ('21.4.16)	-	2023년	최초 ('21.9.1)	-	2023년
소 형	2,400	-	2,600	2,500	-	2,700

※ 경차 : 50% 할인 적용.

다. 통행료의 산출기초

- 협약상 소형차 기준통행료에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누적 적용하여 산정(붙임 참조)

라. 징수기간 : 2023.4.1.부터

마. 통행료 징수방법 : 유인징수 및 전자요금(ETCS)징수 방식 혼용

바. 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 유료도로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8조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붙임 참조)

사. 유사시설의 통행료 수준 : 붙임 참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 제13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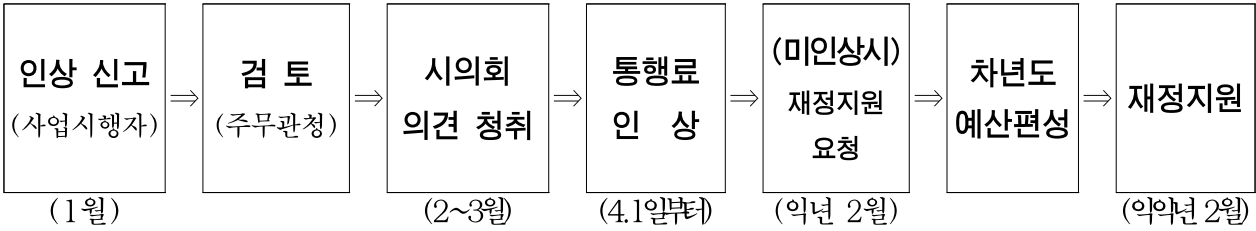
※ 작성자 : 도로계획과 민자사업팀 김정식 (☎ 2133-8073)

붙임

통행료 산정 관련 자료

1. 통행료 인상 절차 및 산정방법

○ 인상 절차



○ 통행료 산정방법(100원 단위 절상 또는 절하)

- 통행료 = 기존 통행료 × 누적 소비자물가지수 변동율

2. 2023년 통행료 산출내역

【용마터널】

- 기준통행료 산정기준 시점인 '01.4월부터 '22.12월까지 누적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은 166.23%로 산정통행료는 1,662원임

(단위 : 원/대, VAT포함)

구 분	소 형	
기준 통행료(실시협약)	1,000. ⁰⁰	
누적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	166. ²³ %	
'01. 4월 소비자물가지수*	65. ⁷⁴	
'22.12월 소비자물가지수*	109. ²⁸	
2023년	산정통행료	1,662. ³¹
	적용통행료	1,700

※ 출처 :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조사, 2022.12.

【강남순환로】

- 기준통행료 산정기준 시점인 '00.11월부터 '22.12월까지 누적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률은 171.67%로 산정통행료는 1,833원임

(단위 : 원/대, VAT포함)

구 분		소 형
기준 통행료(실시협약)		1,067. ⁴⁸
누적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		171. ⁶⁷ %
'00.11월 소비자물가지수		63. ⁶⁶
'22.12월 소비자물가지수		109. ²⁸
2023년	산정통행료	1,832. ⁵⁷
	적용통행료	1,800

【신월여의지하도로】

- 기준통행료 산정기준 시점인 '07.2월부터 '22.12월까지 누적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률 141.89%로 산정통행료는 2,642원임

(단위 : 원/대, VAT포함)

구 분		소 형
기준 통행료(실시협약)		1,862. ⁰⁰
누적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		141. ⁸⁹ %
'07.02월 소비자물가지수		77. ⁰²
'22.12월 소비자물가지수		109. ²⁸
2023년	산정통행료	2,642. ⁰¹
	적용통행료	2,600

【서부간선지하도로】

- 기준통행료 산정기준 시점인 '07.7월부터 '22.12월까지 누적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율 139.86%로 산정통행료는 2,691원임

(단위 : 원/대, VAT포함)

구 분		소 형
기준 통행료(실시협약)		1,923. ⁶⁶
누적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		139. ⁸⁶ %
'07.07월 소비자물가지수		78. ¹³
'22.12월 소비자물가지수		109. ²⁸
2023년	산정통행료	2,690. ⁴⁷
	적용통행료	2,700

3. 차종 구분

구분	대상 차량 제원
소형	승용차, 15인승 이하 소형버스, 2.5톤 미만 소형화물
중형	16인승 이상 대형버스, 2축 이하, 2.5톤 이상~10톤 이하 화물차
대형	3축 이상, 10톤 초과 화물차
경차	배기량 1,000cc 미만 경자동차, 길이 3.6m이하, 너비 1.6m 이하, 높이 2.0m 이하

4. 통행료 면제 및 감면 대상

가. 면제 대상(유료도로법 제15조제2항 및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제3항제1호)

구분	면제 대상
유료 도로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작전용 차량, 구급 및 구호차량,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 ○ 경찰작전용 차량, 교통단속용 차량 및 유료도로의 건설·유지관리용 차량 ○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세대원 소유 차량으로서 독립유공자가 승차한 비영업 차량 중 승용자동차,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 국가유공자(1~5급) 및 5·18민주화운동부상자(1~5급) 또는 대상자의 세대원 소유 차량으로서 대상자 본인이 승차한 비영업용 차량중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6인승~10인승 승용자동차,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 천재지변 또는 파업 등으로 긴급 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수송용 차량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차량
서울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구 제설차량(제설기간, 11.15~익년 3.15) ○ 시 도로유지 관리차량

나. 감면 대상(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제3항제2호)

구 분	감면 대상	감면율
경자동차	○ 배기량 1,000cc 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50%
전기자동차	○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차량	50%
장애인 차량	○ 등록된 장애인 또는 동일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장애인이 승차하는 비영업용 차량*	50%
국가유공자 차량	○ 6급 또는 7급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 또는 동일 세대원이 소유한 차량으로서 당해 국가유공자가 승차하는 비영업용 차량*	50%
5·18 민주유공자	○ 6급 내지 14급의 신체장애등급을 받은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또는 동일 세대원이 소유한 차량으로서 당해 5·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승차하는 비영업용 차량*	50%
고엽제 후유증 환자 차량	○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동일 세대원이 소유한 차량으로서 위 환자가 승차하는 비영업용 차량*	50%

*비영업용 차량(시행규칙 제5조제4항) :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6인승~10인승 승용자동차,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다. 통행료 면제 및 감면 차량의 해당여부 증명

- 영 제8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5조제5항에 따라 식별표지 부착

5. 유사시설의 통행료 수준

관리청	시 설 명	연 장 (km)	통행요금
서울특별시	우면산터널	2.96	소형·중형 : 2,500원
강원도	미시령터널	3.69	소형 : 3,300원, 중형 : 5,600원 대형 : 7,200원
대구광역시	대구남부순환도로 (앞산터널로)	10.44	소형 : 1,600원, 대형 : 2,300원
경기도	수석~호평	11.2	소형 : 1,500원, 중형 : 2,900원 대형 : 3,600원
경기도	일산대교	1.84	소형 : 1,200원, 중형 : 1,800원 대형 : 2,400원
경상남도	마창대교	1.70	소형 : 2,500원, 중형 : 3,100원 대형 : 3,800원
경상남도	창원~부산	22.48	소형 : 2,000원, 중형 : 3,000원 대형 : 3,800원

※ 통행료는 2022.12.31. 기준임

6. 소비자물가지수 추이

	소비자물가지수 (2020=100, %)			
	지수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년누계비
2000.11	63.656	-	-	-
2001.04	65.740	-	-	-
2007.02	77.017	-	-	-
2007.07	78.134	-	-	-
2013	93.010	-	-	1.3
2014	94.196	-	-	1.3
2015	94.861	-	-	0.7
2016	95.783	-	-	1.0
2017	97.645	-	-	1.9
2018	99.086	-	-	1.5
2019	99.466	-	-	0.4
2020	100.00	-	-	0.5
2020.12	100.33	0.2	0.6	0.5
2021.01	101.04	0.7	0.9	0.9
02	101.58	0.5	1.4	1.2
03	101.84	0.3	1.9	1.4
04	101.98	0.1	2.5	1.7
05	102.05	0.1	2.6	1.9
06	102.05	0.0	2.3	2.0
07	102.26	0.2	2.6	2.1
08	102.75	0.5	2.6	2.1
09	103.17	0.4	2.4	2.2
10	103.35	0.2	3.2	2.3
11	103.87	0.5	3.8	2.4
12	104.04	0.2	3.7	2.5
2022.01	104.69	0.6	3.6	3.6
02	105.30	0.6	3.7	3.6
03	106.06	0.7	4.1	3.8
04	106.85	0.7	4.8	4.1
05	107.56	0.7	5.4	4.3
06	108.22	0.6	6.0	4.6
07	108.74	0.5	6.3	4.9
08	108.62	-0.1	5.7	5.0
09	108.93	0.3	5.6	5.0
10	109.21	0.3	5.7	5.1
11	109.10	-0.1	5.0	5.1
12	109.28	0.2	5.0	5.1

※ 출처 :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조사, 2022.12.